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헤아림재활주간보호센터-

제1조(계약기간)

1. 계약 당사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하며,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.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경, 계약기간 종료,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할 수 있다.
3. 수급자(보호자)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.
4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의 개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(보호자)에게 그 내용을 우편, SNS 등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5.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.

제2조(계약목적 및 절차)

1.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 - ①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
 -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2. 서비스 계약체결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내용을 제공하고,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,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 -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.
 -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월 이용료)

1.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」에 따른다.
 - ①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(총수가금액 × 본인부담율)을 수급자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.
 -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급여 등 기타 비용)

1. 병원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 한다).
2.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비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.
3.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,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 단, 수급자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일부 감액할 수 있다.
4.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신원인수인의 권리)

신원인수인은 계약자를 원칙으로 하며, 계약자의 부재 시 보증인으로하며 보호자로서 수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2.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3.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4.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5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을 건의할 권리
6.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7.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제6조(신원인수인의 의무)

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
3. 거주지 등 수급자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5. 기타 본 기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

제7조(계약의 해지)

1. 수급자(보호자)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(보호자)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

④기타 수급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
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⑤수급자의 이사, 장기간 병원 입원 등으로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

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⑧기관의 규칙이나 시설장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3. 수급자(보호자)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